

자랑스러운 한국체대인 상 수여에 관한 규정

제정 2018. 2. 7. 규정 제750호

개정 2020.11.23. 규정 제828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발전과 명예를 높이는 데 공이 큰 사람에게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체대인 상(이하 “한국체대인 상”이라 한다)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후보대상) 한국체대인 상 후보자는 본교 동문, 재학생 또는 본교에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인격과 덕망을 두루 갖추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본교를 빛낸 사람으로 한다.

제3조(수상인원) 수상자는 매년 1명으로 한다.

제4조(후보추천위원회) ① 한국체대인 상 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훈련학생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본부장, 학보사 주간, 각 학과장 9명 <개정 2020.11.23.>
2. 임명직 위원 : 총장이 임명하는 교양, 전공이론, 전공실기, 전문실기 교수 각 1명
3. 외부 위원 :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동문 2명

③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임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추천후보 심사
2. 최종 후보자를 총장에게 복수 추천
3.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수당)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후보자 추천) ① 한국체대인 상 후보자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추천한다.

② 추천자는 별지 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상자 선정) 총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한국체대인 상 수상자로 선정한다.

제9조(예우) ① 한국체대인 상 수상자에게는 본교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및 자료 등을 보내고, 본교의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예우한다.

② 한국체대인 상 수상자는 개교기념 행사 시 시상하며 기념패와 부상을 준다.

부 칙 (제750호, 2018. 2. 7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828호, 2020. 11. 23.) (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자랑스러운 한국체대인 상 수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교학처장” 을 “교무처장” 으로, “훈련처장” 을 “훈련학생처장” 으로, “대외협력단장” 을 “산학협력본부장” 으로 한다.

[별지 서식]

「자랑스러운 한국체대인 상」 후보자 추천서

후보자 인적 사항

성 명	
생년월일	
연 락 처	
현 직	
추천사유	
붙 임	공적사항 1부

위와 같이 「자랑스러운 한국체대인 상」 후보로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추천자 소 속:

직 위:

성 명: (인)

연락처:

「자랑스러운 한국체대인 상」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

공 적 사 항

학 력	기 간		학 교
	학사	. . ~ . .	
	석사	. . ~ . .	
	박사	. . ~ . .	
경 력	기 간		내 용
		. . ~ . .	
		. . ~ . .	
		. . ~ . .	
		. . ~ . .	
상 별 사 항	연 도	수 상 내 용	
저 서	연 도	저 서 명	
주 요 공 적	<p>※ 주요공적을 구체적으로 기술</p>		